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 자료

□ 금전대차계약 관련 사실관계

1985년경 본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약 1,34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받은 합의금이었습니다. 지금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으나 당시에는 큰 돈으로 부끄러움에 보관하던 종이었습니다.

당시 동생인 임상구가 가족들과 제주도에서 살아 보겠다고 제주도 어귀까지 갈 살피려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동생은 계가 교통사고로 받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주도에 좋은 토지가 있으니 토지 매입비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하던 중 저의 부인이 개인 직업이 있어 돈을 받고 있던 상환이라 당장 급한 돈은 아니니 향후 토지가 팔리면 갚아달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차용증 미작성 및 이자 미수령 경우

당시 친동생에게 빌려주는 돈이라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당연시되고 있지만, 30년 전 당시에는 모르는 남에게 빌려주는 돈도 아니고, 형제간에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잘 작성하지 않는게 관행이었습니다. 오히려 형제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믿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 걱정을 상하게 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게 되어 작성하지 않고 서로 믿고 빌려주는게 관행이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질수는 있으나 당시에 저희 형제들은 어려운 유년시절을 같이 보냈기에 누구보다 더 끈끈한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구입한 토지는 제주 중산간 지역에 있는 농지였기 때문에 가격 잘 오르지도 않았고 동생도 터를 잡고 자녀들을 키우고 밤농사를 지으며 살았기에 장기간에 걸

쳐 매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금전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내지 매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지금이야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받아서 세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남겨 두어야 된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세금 관련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당장 크게 필요한 돈이 아니었으며 동생도 자녀들을 키운다고 고생하고 있었기에 토지가 팔리면 반기로 하여 별도의 이자 정산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동생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 결혼, 노후 자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고, 과다 학습한 것처럼 토지를 매도한 금액 중 일부를 저에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 원금 및 이자 초과 금액 수령 경우

동생은 토지를 2017년경에 처음 매도하게 되었고, 제가 동생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귀농하여 살기 위해 제주도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당시 제주도에서 거주할 주택 건축비, 저의 자녀(임현정) 결혼식 준비 자금, 노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생이 그런 형을 보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되갚는 차원에서 당시 빌려간 원금과 이자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부터 저와 저의 부인, 결혼 준비 중이던 저의 자녀에게 돈이 입금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녀 결혼식 준비, 제주도 이사 등 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로 과거에 동생이 어려울 때 빌려주었던 돈을 동생으로부터 돌려받으면서 많이 받게 되었는데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 원금 및 이자 정산 금액 관련 소명

동생에게 당시 빌려 준 돈은 1985년~1986년경 금 13,480,000원으로 1985년 당시 정기예금 금리는 약 10%였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기간은 약 31년 7개월로 만기 일시 상환으로 변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 7195 단

* 1985년 정기예금 금리(10%) 반영 계산식 *	
- 만기일시 상환	
- 대출원금	13,480,000원
- 총대출이자	42,574,333원
- 총상환금액	56,054,333원

동생으로부터 받은 이체 받은 금전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위 총상환금액 금 56,054,333원은 빌려준 돈의 변제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세금 계산시 공제하여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로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수령하여 보관 중이었던 1985년 발행 부산은행 통장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개인 간에 계좌이체가 활발하지 않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많이 전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당시 교통사고로 휴유증 치료 등을 위하여 제주도와 부산을 왕복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 13,4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계좌이체를 사용하였다면 명확히 입증자료를 남길 수 있었겠지만, 30년전 당시만 하더라도 전산에 익숙하지 못했고 동생과 금전대차계약도 구두로 약속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시기라서 명확히 차용증과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금전을 동생에게 빌려준 것은 명백히 사실이며,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세금 계산시 위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절대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저나 동생 모두 배움이 부족하여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이니 선처를 바랍니다.

2023. 6.

임 영 구 (인)

정부 1

